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82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운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정지웅, 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 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‘에 규정되어 있는 강의실 면적 제한 기준은 1995년에 처음 수립된 후 28년째 바뀌지 않는 등 그동안 사회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- 실제로 현재 서울 관내 다수의 학원 현장에서는 수강신청 및 자리선점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의실 내 학생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학원 강의실 단위면적 최대 상한 기준을 삭제함(안 제4조 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이상 135제곱미터(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)이하”를 “이상으”로, “1명”을 “135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0.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단위시설의 기준) ① 법 제 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강의실: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<u>이상</u> 135제곱미터 (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<u>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</u>)이하로 하되,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<u>1명</u>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제곱미터 이상(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 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)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단위시설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이상으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135제</u> <u>곱미터</u> <u>이하</u>는 1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, <u>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0.8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